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유섭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13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7. 21.

발의자 : 정유섭 · 조경태 · 김성찬
신보라 · 윤한홍 · 송석준
박성중 · 곽대훈 · 함진규
성일종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안전인증대상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제품이 국외 인증기관에 인증 및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 안전 인증 및 확인 시 절차를 면제해주고 있음.

이에 따라 안전 인증 및 확인 면제제품에 대한 인증 및 확인을 수행하는 기관은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KC인증마크를 부여토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현재 안전 인증 및 확인 면제제품에 대한 인증기관의 확인 시 사업자가 제출하는 물건이나 자료가 제한적으로 해당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.

일례로 2016년 제품 생산 및 판매 전면중단에 이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배터리 제품의 경우 국외 인증기관에서 안전 인증 후 국내 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인증시험 과정 절차가 일부 미진하다는 의

혹이 발견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증기관은 제한된 자료로 인해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.

이는 국외 인증 획득 후 국내 인증 획득 시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 적합성 확인 절차가 소홀히 이뤄졌던 측면과 함께 인증요청 사업자의 관련자료 제출이 소극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인증기관이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환경에 기인하는 탓임.

이에 안전 인증 및 확인 면제 제품에 대해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, 이 과정에서 인증 및 확인시험 기관이 필요시에는 해당 제조업자 및 수입 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인증절차를 강화하고자 함(제5조제5항·제6항 및 제15조제5항·제6항 신설).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안전인증기관은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가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⑥ 안전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16조제4호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같은 호에 따른 제품시험에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⑥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물건

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안전인증 등) ① ~ ④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안전인증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안전인증기관은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가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u> <u>⑥ 안전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</p>
<p>제15조(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) ① ~ ④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15조(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16조 제4호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</u></p>
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상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같은 호에 따른 제품시험이 제3항에 따른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⑥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